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4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형 · 김재원 · 정춘생 · 백선희 · 박은정 · 최혁진
윤종오 · 김종민 · 정혜경 · 이해민 · 서왕진 · 황운하
강경숙 의원(13인)

2. 발 의 일 : 2025. 12. 8.

3. 회 부 일 : 2025. 12. 9.

※ 의안번호 : 1499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 ·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

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임(안 제4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내용임(안 제46조의4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 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 ②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 ③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당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④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

현행	개정안
	<u>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⑦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u>⑧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 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적 주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수원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 ODA(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와 무상 ODA(Grant, 증여)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 ODA와 무상 ODA를 각각 재정경제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유상 ODA의 시행기관은 수출입은행(EDCF) 1개, 무상 ODA의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

단(KOICA)을 포함한 46개 기관임¹⁾.

이에 따라 국회에서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안건은 주로 재정경제부를 소관으로 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외교부를 소관으로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①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에 달하는 ODA 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³⁾ ② 정부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③ 최근 유·무상 ODA 간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동일 수원국에 대하여 ODA 사업들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다부처 협업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⁴⁾ 등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되는 부분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⁵⁾ ②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운영을 위한

1)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2025.7., pp.388~391

2) 그 밖에 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ODA 관련 사업을 심사하고 있음.

3) 2025년도 ODA 사업의 확정액 규모는 약 6조 5,010억으로, 전년도 대비 2,381억원(3.8%) 증가하였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9

4) 예를 들어, ‘가나 농업 패키지’의 경우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ODA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2025.7., pp.432~435

5) 현재도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5.29.), 산불피해지원

추가적인 예산 및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이와 유사하게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
로 그 내용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대책 특별위원회(~2026.3.31.) 등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6) 의안번호 2213195, 허성무의원 대표발의(2025.9.23.)